□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

- 〈제13조의5 해외취업교육과정 학점인정〉 재학생들의 해외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개설한 국·내외 해외취업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

□ 학칙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조 ~ 제13조의4 (생 략)	제1조 ~ 제13조의4 (현행과 동일)
〈신 설〉	**제13조의5(해외취업교육과정 학점인정) ①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개설한 국·내외 해외취업교육과정에 대하여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단, 해외취업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과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30학점으로 제한한다.** **②해당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**
제14조 ~ 제75조 (생 략)	제14조 ~ 제75조 (현행과 동일)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